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소비자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공정거래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집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집단분쟁의 신청기준을 완화하고,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,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「소비자기본법」(법률 제19511호, 2023. 6. 20. 공포, 2023. 12. 21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,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 완화(안 제56조)

- 1) 최근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, 현행 법령 하에서는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이어야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.
- 2) 이에 개정안에서는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‘예상’되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.
- 3)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, 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.

나. 수소(受訴)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절차 마련(안 제62조의2)

- 1) 최근 「소비자기본법」(법률 제19511호, 2023. 6. 20. 공포, 2023. 12.

21. 시행)이 개정되어(제68조의4 신설),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결합할 경우,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게 됨.

2)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, 분쟁조정위원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사실, 조정 결과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8. 25. ~ 10. 4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50명 이상일”을 “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될”로 한다.

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2조의2(소제기의 통지) ①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

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소 제기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.

1.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(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)

2. 분쟁조정 신청일

3.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

③ 조정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진행한 조정절차를 종료

한 경우(조정신청을 각하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6조(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) 법 제68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. 1.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가. ~ 다. (생략) 2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6조(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될</u> ----- ----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<u>제62조의2(소제기의 통지) ①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</u> <u>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소 제기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</u>

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.

1.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(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)

2. 분쟁조정 신청일

3.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

③ 조정위원회는 법 제68조의4 제2항에 따라 진행한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(조정신청을 각하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0 - 4407